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선택한 경우의 []에 V표 합니다.)

[] 예

[] 아니오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① 연번	②국가명	③국가 코드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⑥국가별 공제 한도	⑦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⑧이월배제액	⑨차기이월액
			④전기 이월액	⑤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1								
2								
3								
4								
5								
합 계								

3. 필요경비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금 액
⑩ 매출원가 계상	
⑪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⑫ 제조원가에 계상	
⑬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⑭ 세무조정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	
합계(⑩+⑪+⑫+⑬+⑭)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의 관련법령, 조문) 등
------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예'에 'V'로 표기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3.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 또는 '아니오'의 선택에 따라 다음 구분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예'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를 작성하고 '3. 필요경비산입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작성하지 않고 '3. 필요경비산입 명세'를 작성합니다.
4.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5. ④ 전기이월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⑭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6.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합니다.
7. ⑥ 국가별 공제한도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⑬ 공제한도를 기재합니다.
8. ⑦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⑯ 당기 실제세액공제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⑧ 이월배제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⑰ 이월배제액의 당기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⑨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⑱ 차기이월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⑩ ~ ⑭란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과세 기간	· · · ~ ·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① 국가명		② 국가코드		
-------	--	--------	--	--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⑦ 감면비율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공제한도	⑪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⑫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당기 공제 대상세액	⑭ 전기 이월액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⑭ + ⑮)	
이월배제액	⑰ 한도초과액(⑮ - ⑬, 음수인 경우 영(0))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⑲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⑰과 ⑱ 중 작은 금액)	
⑳ 차기 이월액(⑯ - ⑬ - ⑲, 음수인 경우 영(0))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원)

② 과세 기간	②② 당초 외국 납부세액 발생액	②③ 전기 누적 공제액	②④ 당초 이월 배제액	②⑤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②②-②③-②④=②⑥)	②⑥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②③)	②⑦ 이월배제액 (②⑨)	②⑧ 차기이월액 (②⑤-②⑥-②⑦)
당 기							
합 계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 포함)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란은 국가별 종합 합산과세 되는 소득(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주택임대·기타소득 등 제외)을 기재합니다.
4. ④ 국외원천소득(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주택임대·기타소득 등 제외)에 대응하는 비용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직접비용 및 배분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연금)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연금)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연금)소득공제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5.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6.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7.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8. ⑧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음수인 경우(즉 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에는 영(0)을 기재합니다.
9.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적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00 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 - (600 \times \frac{500}{1,000}) = 200$	$120 \times \frac{200}{400} = 60$	산출 세액 12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 - (600 \times \frac{300}{1,000}) = 120$	$120 \times \frac{120}{400} = 36$	
국내	-	200	-	-	
계	160	△600 1,000	320	96	

10.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종합소득금액(또는 퇴직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 ~ ⑨ 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12. ⑯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을 의미합니다.
13. ⑰ 과세기간란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⑳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기재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14. ㉑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과세기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기재합니다.
15. ㉒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과세기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16. ㉓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7. ㉔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⑬ 공제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㉓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과 세 기 간	. . . ~ . .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단위 : 원)

① 연 번	소득발생처		⑤ 소득 구분 코드	⑥ 국외원천 소득		외국납부세액		
	② 국가명	③ 코드				⑦ 직접	⑧ 간주	⑨ 하이브리드 (Hybrid)
1					세목			
					세액			
2					세목			
					세액			
3					세목			
					세액			
4					세목			
					세액			
5					세목			
					세액			
6					세목			
					세액			
7					세목			
					세액			
8					세목			
					세액			
9					세목			
					세액			
10					세목			
					세액			
11					세목			
					세액			
12					세목			
					세액			
13					세목			
					세액			
14					세목			
					세액			
15					세목			
					세액			
합 계					세액			

작성 방법

1.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⑤ 소득구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을 기재하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93조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코드	INT	DIV	BSI	ERN	PSN	ETC	RET

3. ⑥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배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직접비용·배분비용 계산 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⑦~⑨ 외국납부세액란은 아래 표와 같이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외국납부세목과 외국납부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구분(약자)	관련근거
⑦ 직접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
⑧ 간주	「소득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⑨ 하이브리드(Hybrid)	「소득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

5. ⑦~⑨ 외국납부세액란의 세목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⑦~⑨ 외국납부세액란의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3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⑫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과 세 기 간	 ~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명세

①외국법인명	②소재지국	③국가코드	④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⑤현지납세자번호

2.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 명세

(단위:원)

⑥외국법인명	외국법인 소득발생 내역		⑨거주자의 손익분배비율	⑩수입배당금	⑪거주자가 부담한 외국 납부세액	⑫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 자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⑪×⑩/(⑧×⑨-⑪)]
	⑦사업연도	⑧소득금액				
합 계						

3. 거주자가 소득 발생 국가에서 직접납세의무를 부담한 내역

(단위:원)

⑬외국법인명	⑭사업연도	⑮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거주자가 부담한 금액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주자가 부담한 경우			⑰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납부세액 [⑮+⑱]
			⑯국가명	⑰국가코드	⑱부담한 금액	

작성 방법

- ①, ⑥, ⑬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 ②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④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⑤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 ⑦, ⑭란은 거주자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 ⑨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손익분배비율을 적습니다.
- ⑩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 ⑪란은 외국법인명과 사업연도가 일치하는 ⑩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⑫란은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⑮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⑯란은 외국법인[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하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경우 그 원천지국 국가명을 적습니다.

(앞쪽)

과세 기간	. . . ~ . . .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1.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구분		금액
공제한도	① 산출세액	
	②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	
	③ 과세표준	
	④ 공제한도(① × ② / ③)	
당기공제 대상세액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⑦ 당기 공제대상 세액(⑤ + ⑥)	
⑧ 공제한도 초과액[⑦ - ④, 음수인 경우 영(0)]		
⑨ 차기 이월액[⑦ - ④, 음수인 경우 영(0)]		

2. 공제세액 계산

⑩ 과세기간	⑪ 당초 공제대상 외국납부 세액 발생액	⑫ 전기 누적 공제액	⑬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⑪-⑫)	⑭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 ≤ ④)	⑮ 차기 이월액 (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					
합계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②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란: 「소득세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합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되,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 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⑥ 당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5 ⑫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⑩ 과세기간란: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과세기간을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순서대로 적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⑪ 당초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5. ⑫ 전기 누적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6. ⑬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이월공제기간(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차감하고 적습니다.
7. ⑭ 당기 실제 세액공제란: ④ 공제한도란에 적힌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⑬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에 적힌 금액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외국납부세액부터 순서대로 적습니다.

과세 기간	~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위 : 원, %)

① 연 번	소득지급자		간접투자회사등		⑥ 지 급 받 은 소 득	외국납부세액					⑫ 공 제 대 상 외 국 납 부 세 액 (⑦×⑪)
	② 상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④ 투 자 회 사 명 또 는 투 자 신 탁 명	⑤ 간 접 투 자 회 사 등 사 업 연 도 또 는 회 계 기 간		⑦ 간 접 투 자 외 국 법 인 세 액	⑧ 외 국 원 천 징 수 세 율	⑨ 국 내 원 천 징 수 세 율	⑩ 한 계 세 율	⑪ 공 제 율	
1											
2											
3											
4											
5											
6											
7											
합계											

작성 방법

1. ② 상호란 및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④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란: 소득을 지급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등(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명을 적습니다.
 3. ⑤ 간접투자회사등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란: 간접투자회사등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을 적습니다.
 4. ⑥ 지급받은 소득란: 각 소득발생처별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그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소득으로 한정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⑦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란: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투자회사별 또는 투자신탁별 간접투자외국납부세액을 적습니다.
 6. ⑧ 외국 원천징수세율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적되,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14 퍼센트로 기재합니다.
 7. ⑪ 공제율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을 합계란에 적습니다.
- 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나. 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